

Legal Design @ Thinking

## Strategic Communication Planning & Legal Design:

### K-Contents 계약분쟁 예방 사례를 중심으로

서유경 변호사 (법률사무소 아티스) | E-mail: [ykseo@artislaw.pro](mailto:ykseo@artislaw.pro)



## 서유경

법률사무소 아티스  
변호사 · 변리사

E-mail. [ykseo@artislaw.pro](mailto:ykseo@artislaw.pro)  
Web. <http://artislaw.pro/>  
Blog. <http://arteco.legal/>

## 학력

-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학사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연합전공 정보문화학 학사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재학 중

## 활동 (공적영역만 기재하고, 민간영역은 기재하지 않음)

- 서울문화재단 예술청 법률상담지원 변호사
-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 부산정보산업진흥원(부산글로벌웹툰센터) 헬프데스크 법률 컨설턴트
-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위원회 중국/소아시아 분과위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위원회 사법(민사/상사) 분과위원
- 특허청 상표 · 디자인 분야 자문 공익 변리사

## 언론/인터뷰

- [법률신문] (2021-08-30)  
[서유경 아티스 변호사… 디자이너들이 겪는 법적분쟁서 해결사 노릇 톡톡히](#)
- [IT Chosun] (2021-07-22)  
[웹툰 ‘공정 계약’ 위해 힘쓰는 아티스 서유경 변호사](#)

과거에는 작가가 직접 플랫폼에게 오리지널 콘텐츠를 납품하고

플랫폼은 그것을 연재하는 단순한 구조의 계약이 체결됐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서다.

작가와 에이전시, 스튜디오, 매니지먼트, 플랫폼 등이 복잡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하나의 계약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고려돼야 한다.

... (중략) ...

웹툰은 다양한 IP비즈니스로 발전해나갈 수 있는 씨드 콘텐츠(seed-contents)다.

그렇기에 원작을 토대로 한 게임과 영화 등 2차 저작물 시장을 비롯해

콘텐츠 투자 영역까지 ‘원스톱(one-stop)’으로 배울 수 있는 무척 소중한 기회다.

## IT CHOSUN [인터뷰] 웹툰 '공정 계약' 위해 힘쓰는 서유경 아티스 변호사

출처 :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7/21/2021072102156.html](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7/21/2021072102156.html)

[인터뷰] 웹툰 '공정 계약' 위해 힘쓰는 서유경 아티스 변호사

이은주 기자

입력 2021.07.22 06:00

웹툰, 월설 등 콘텐츠 저작재산권(IP) 확보 경쟁이 치열하다. 웹툰은 게임, 영화, 드라마 등 다양한 IP비즈니스로 발전해나갈 수 있는 씨드 콘텐츠(seed-contents)다. 웹툰을 원작으로 만들어진 드라마 '스위트홈' 등이 넷플릭스를 통해서 전세계에서 사랑받는 현상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그렇기에 매력적인 웹툰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동시에 이런의 그늘도 짙어지는 중이다. 콘텐츠에서 파생 가능한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창작자의 저작권을 부당하게 가져려는 기업들의 시도들도 빈번하게 지속되고 있다. 특히 힘없는 신인 작가들은 이러한 불공정 계약의 그늘에 노출되고 있다. 저작권 일체를 작가에게서 '양도' 받으려는 에이전시, 매니지먼트들의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

서유경 법률사무소 아티스 변호사는 이같은 문제에 천착해, 작가들의 법을 상담을 진행해왔다. 그는 작가들이 온전히 가져야 할 자신의 저작권을 부당하게 빼앗기지 않아야 한다고 믿는다. 저작권은 작가에게 '생명'같기 때문에 온전히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누구보다 철저하게 창작자들을 대리하고 있다.

이제 막 성장을 시작한 웹툰 분야의 특수성과 함께, 신인 창작자들의 협상력은 기업에 비해 높지 않아 결코 쉽지 않은 암다. 그는 계약법이나 저작권법 판례들을 끊임없이 공부한다. 때로는 해외 다른 장르 콘텐츠 분야에 적용된 법리를 참고도 한다. 그렇게 작가들에게 공정한 시장이 형성되도록 할 수 있길 바란다. 서 변호사로부터 작가들이 계약시 영수에 뛰어 할 기본 원칙과, 공정한 콘텐츠 계약 체결을 위해 뛰어 린 배경을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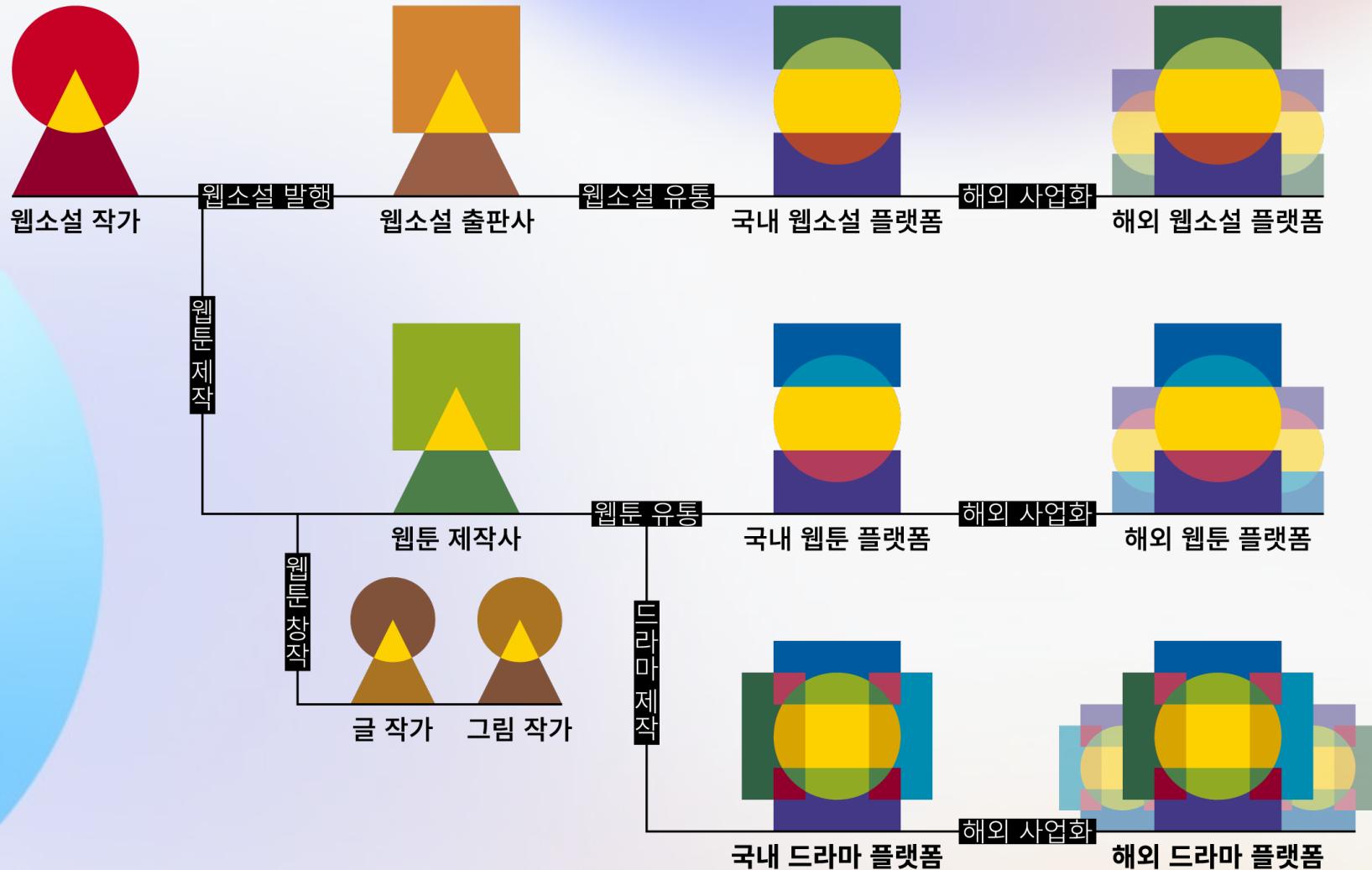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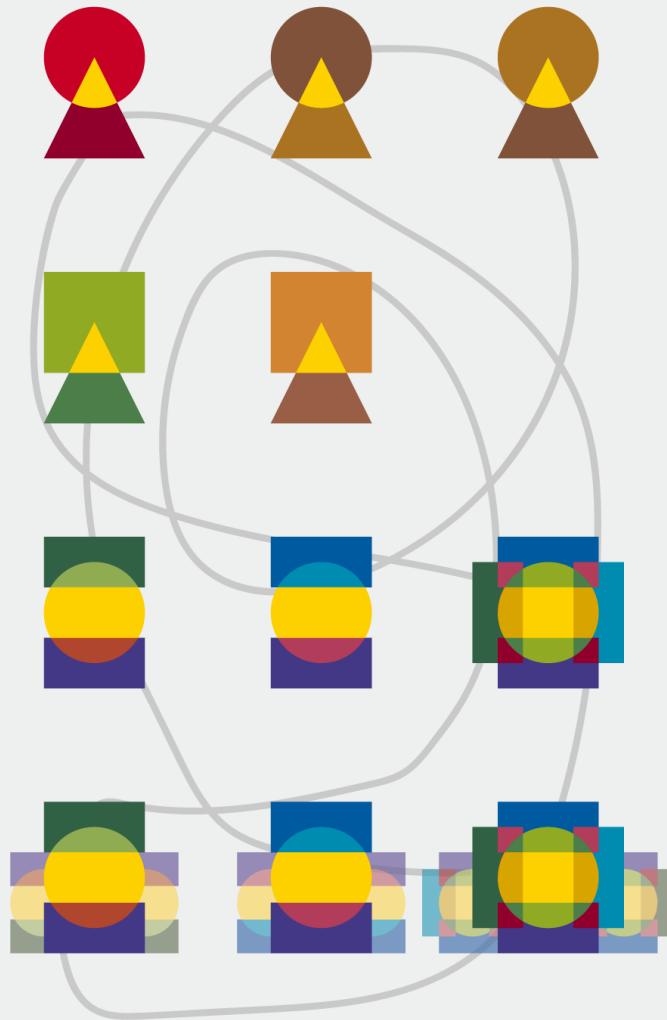
서유경 법률사무소 아티스 변호사 / 이은주 기자

“디자인학부를 졸업했고, 스타트업 디자이너로 잠시 일했다. 이후 로스쿨을 나와 변호사가 됐다. 대학 동기들이 일하는 것을 보면서 예술과 디자인, 콘텐츠 산업에서 다양한 법을 수요가 있음에도 그 분야를 온전히 이해하고 소통 가능한 변호사가 귀하다는 점을 알게 됐다. 저의 전공을 기반으로 법을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로 일하면, 디자인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나 문제들을 해소하는데 일조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미대 출신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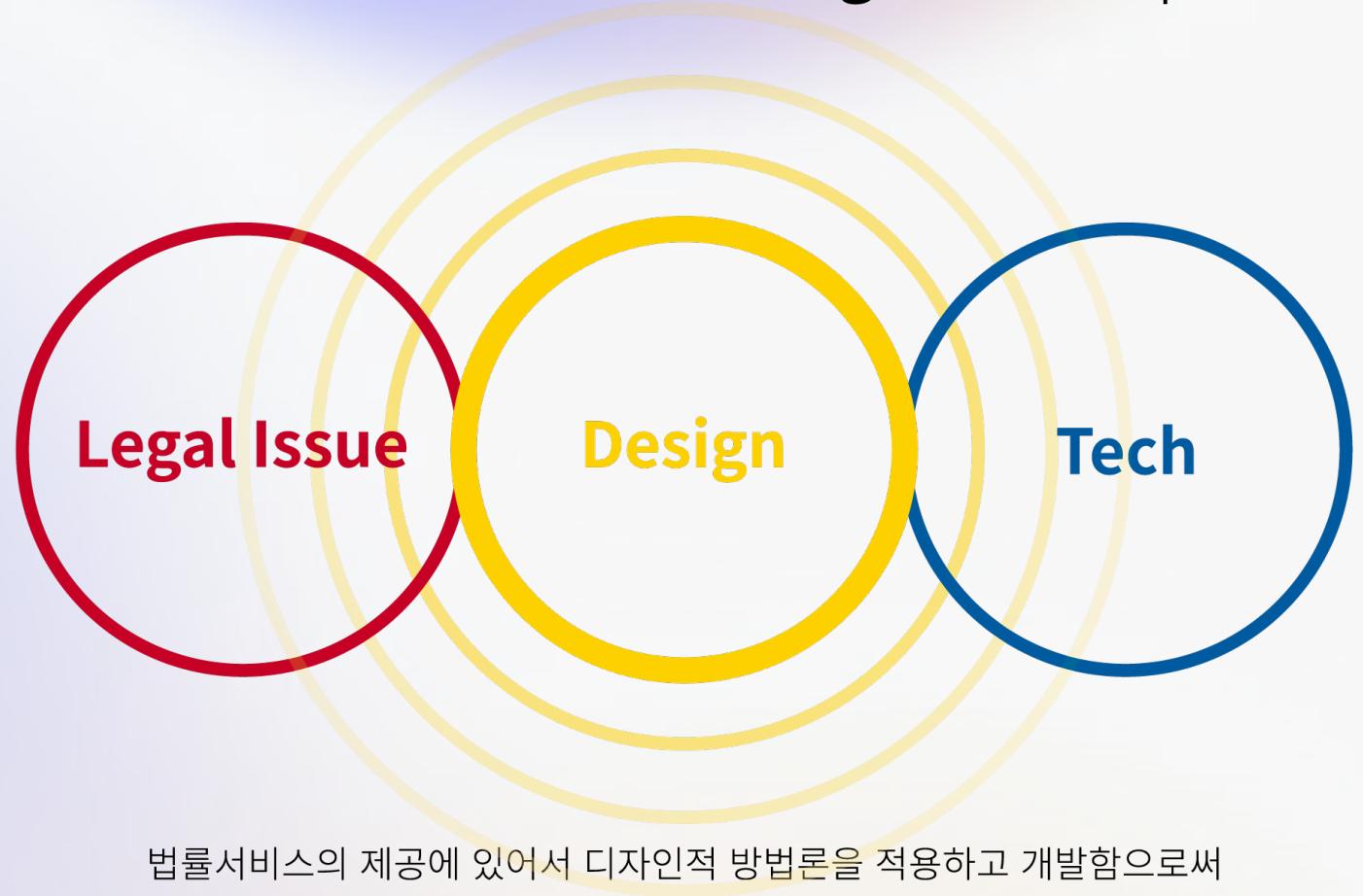
### —웹툰 저작권 계약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대학 시절 가장 친한 친구가 웹툰 작가였다. 꽤 유명한 작가다. 창작하는 과정부터 성장하는 과정을 염두에서 지켜볼 수 있었다. 게다가 저는 일과 이론에 꾸준히 유료 결제를 하면서 웹툰을 보며 스트레스를 풀 만큼, 웹툰이라는 장르에 대한 애정이 깊다. 한때는 웹툰 캐티, 습작 시나리오를 그리며 창작자를 꿈꾸기도 했다. 다만 저는 작품을 잘 만드는 데 능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았다. 좋은 작품을 만드는 작가들이 자신의 재능과 열정이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제가 가진 법적인 지식들을 기반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 생각했다.”





4D: Dream - Draw - **Design** - Develop



법률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디자인적 방법론을 적용하고 개발함으로써  
법률서비스 이용자들의 경험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론

# Cas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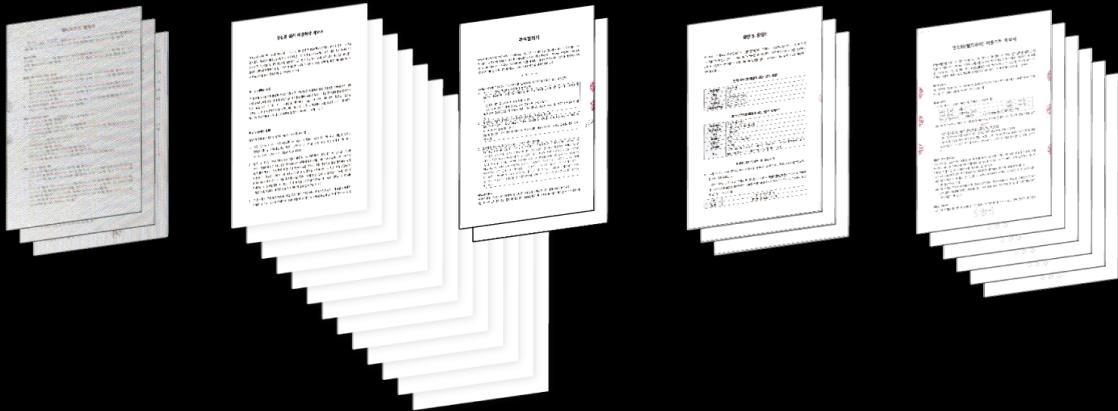
## 계약의 채권적 효력과 비밀유지의무

- \* 채권적 효력: 채권의 변동이 당사자 간의 관계에서만 인정되며, 대세적 관계에서 인정되지 않음.
- \* 물권적 효력: 물권의 변동으로 생기는 법률효과를 누구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대세적 효력.

### 제 13 조 (비밀 유지 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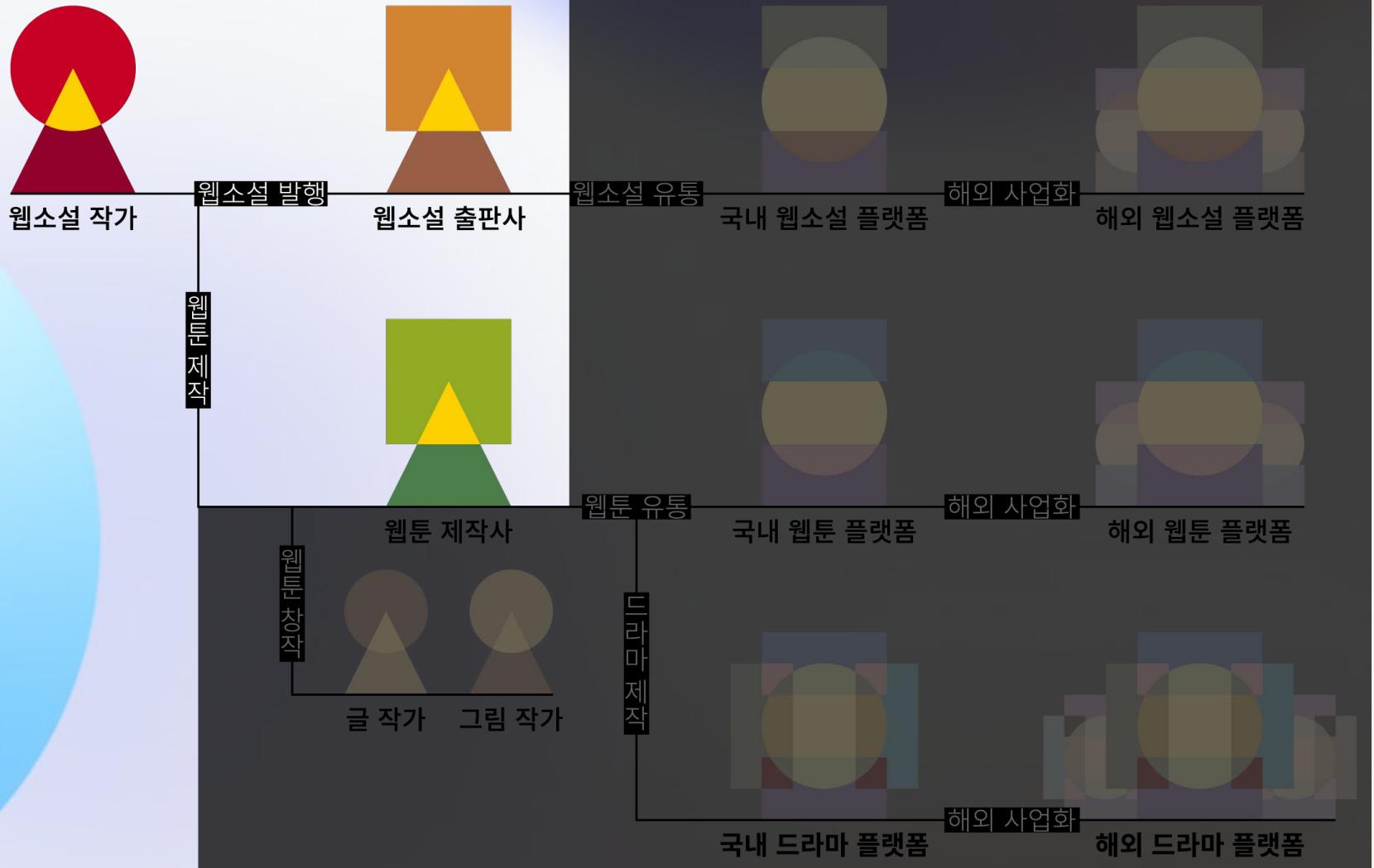
1. ‘당사자들’은 ‘본건 계약’의 내용 및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하였거나 향후 취득할 상대방의 사업상 정보, 노하우, 영업상 비밀 등 일체의 자료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종업원, 대리인, 상담역 등으로 하여금 누설되지 않도록 가능한 필요한 조치를 모두 다하여야 한다.
2. 본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호의 정보는 비밀유지의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 가. 상대방으로부터 공개된 시점에서 이미 공지가 되어 있는 정보
  - 나. 상대방으로부터 공개된 시점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정보
  - 다.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 라. 제3자로부터 정당하게 입수한 정보
3. 본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호의 경우라면 비밀유지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아래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즉시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서면 통지한 후,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 가. ‘본건 계약’에서 일방의 당사자가 이미 허락을 한 내용을 공개한 경우
  - 나. 법령의 적용에 의하여 공개한 경우
  - 다. 국회 · 사법기관(법원, 검찰 등) 내지 정부나 공공기관의 공식적 절차에 의해 공개하는 경우
  - 라. 관련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등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을 가진 전문직 대리인에 의하여 공개하는 경우
4. 본 조 제1항의 정보를 포함하여 모든 자료들은 ‘본건 계약’이 기간의 만료, 해지 등의 사유로 종료되거나 또는 수령자가 더 이상 자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제공자의 요청에 따라 즉시 회수 또는 파기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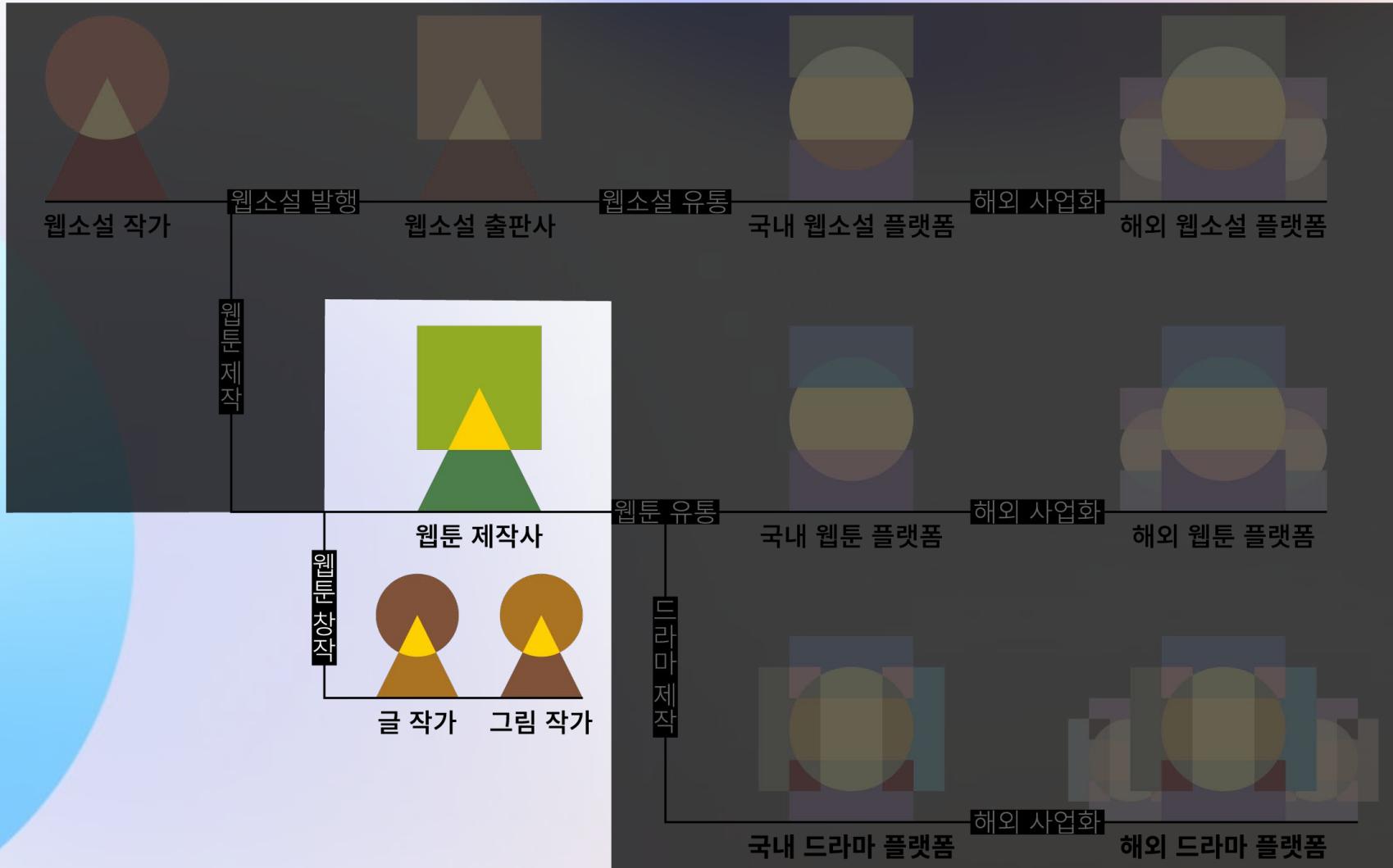
웹소설이 웹툰으로,  
웹툰이 드라마로,  
얼마나 많은 계약이 있을까?



이때,

웹소설 작가와  
웹툰 작가는  
관련된 계약의 내용을  
얼마나 파악할 수 있을까?





# Case 2

## 공동저작권의 설정과 대표권의 행사

### 제15조(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 ①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다.
- ② 공동저작물의 저작자는 그들 중에서 **저작인격권을 대표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정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대표하여 행사하는자의 대표권에 가하여진 제한이 있을 때에  
그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제48조(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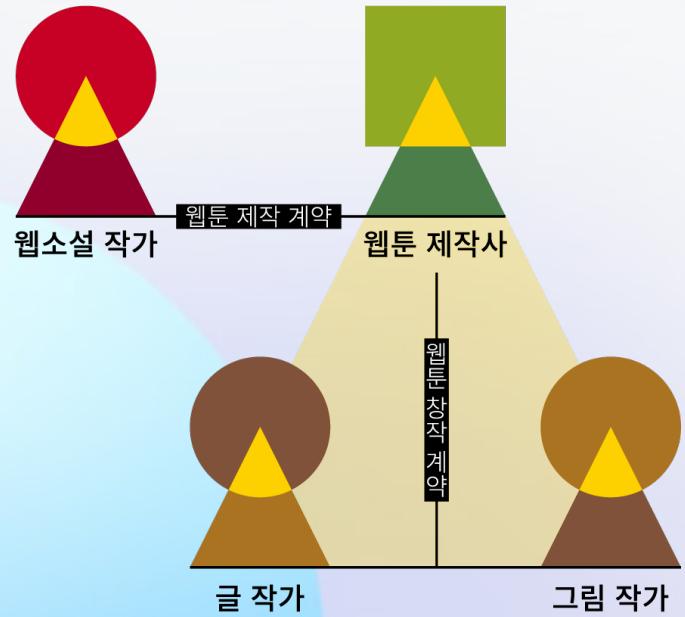
- ①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 ② 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공동저작자 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 저작물의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된다.  
이 경우 각자의 이바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③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는 그 공동저작물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할 수 있으며,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지분은 다른 저작재산권자에게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 ④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그림 작가님, 저 **글 작가**인데요 ... 이번에 **웹툰 영상화** 되는 거 들으셨어요?  
혹시 영상화 되고 나면 **수익분배**는 어떻게 해준다는 말 들으셨나요?”

“마감한다고 늦게 답장드려요. 아, 영상화 된다는 이야기는 듣긴 했는데 ...  
수익분배율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들은 바는 없는데 n% 정도 되지 않을까요?”

“사실 **제가 제작사와 공동저작권 계약을 체결했는데 ...**  
아무런 사전 통지도 없이 영상화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니 좀 당혹스럽네요.”

“글 작가님도 공동저작권 계약을 체결하셨어요? 저도 그렇게 했는데!  
**어?! 그럼 우리 공동저작권자네요?** 그런데 제작사가 왜 단독으로 결정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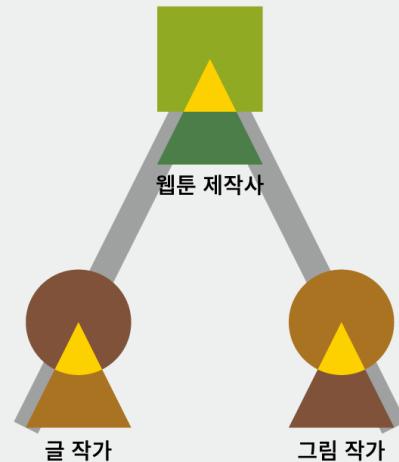
### 저작인격권

글 작가, 그림 작가

### 저작재산권

웹툰 제작사 : 글 작가 : 그림 작가 = 1 : 1 : 1

### 시옷자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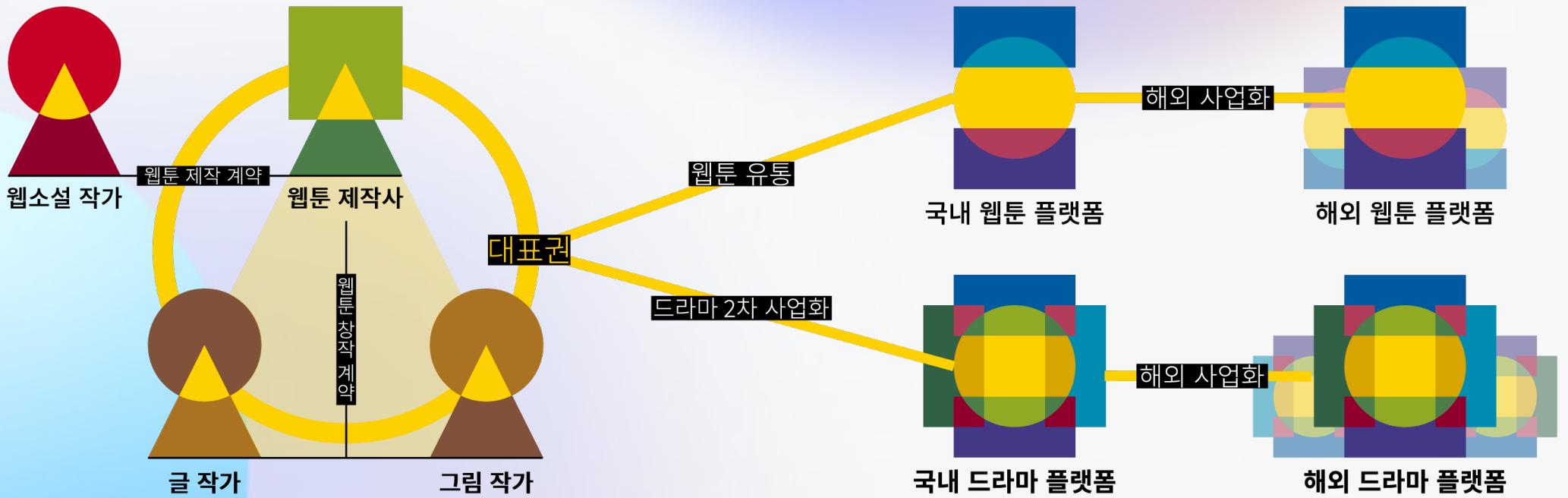
웹툰 제작사가  
글 작가와 그림 작가를 따로 섭외해서  
각각 별도로 공동저작권 설정계약을 체결함  
(글 작가와 그림 작가는 비밀유지조항에  
따라서 서로의 계약조건을 모름)

### 라운드 유형



웹툰 제작사, 글 작가, 그림 작가  
공동저작권자 전원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공동저작권 설정 계약을 변경함

(공동저작권자 전원이 공동저작권의 행사 및  
수익배분조건 등 계약의 주요내용을 알게 됨)



계약의 초기에 **공동저작권을 제대로 설정**하고  
**대표권자를 정확하게 명기**하여 대외적으로 표시하여야  
**연쇄적인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안정적인 사업화**를 도모할 수 있다.

### Case 3

수익정산의 핵심은  
모수(母數)의 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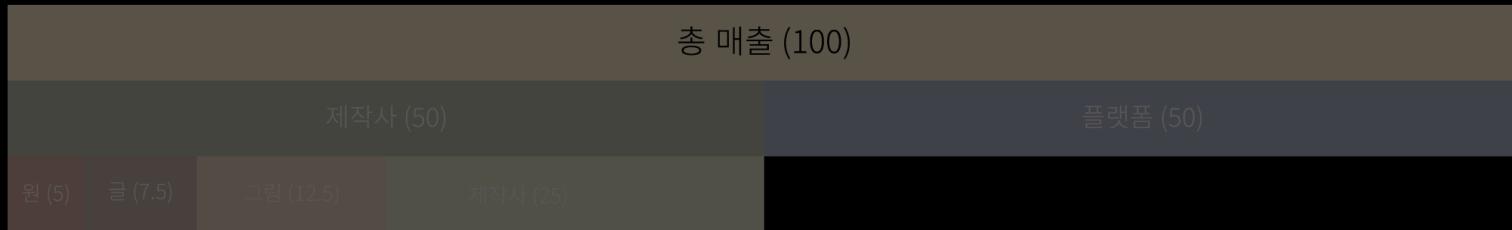
in*nvisible*      *v**sible*  
*v**sible*      *nvisible*  
*nvisible*      *v**sible*  
*nvisible*      *v**sible*

계약서 상에는 제 수익분배비율이 16.6%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기준으로** 16.6%라는 것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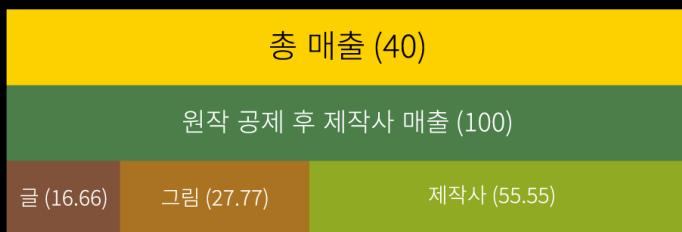
플랫폼과 원작자님 몫을 모두 공제하고 난 나머지에서 16.6%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다른 분들의 분배비율을 일일이 알려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총 매출로 인해 발생한 수익대비  
제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분배비율이 도대체 얼마나 되냐는 거예요.  
정산을 하려면 **무엇이 모수가 되는지 파악하는 게 핵심**이잖아요.

# 불신은 보이지 않을 때 발생한다.



# 투명하게 보일 때 신뢰할 수 있다.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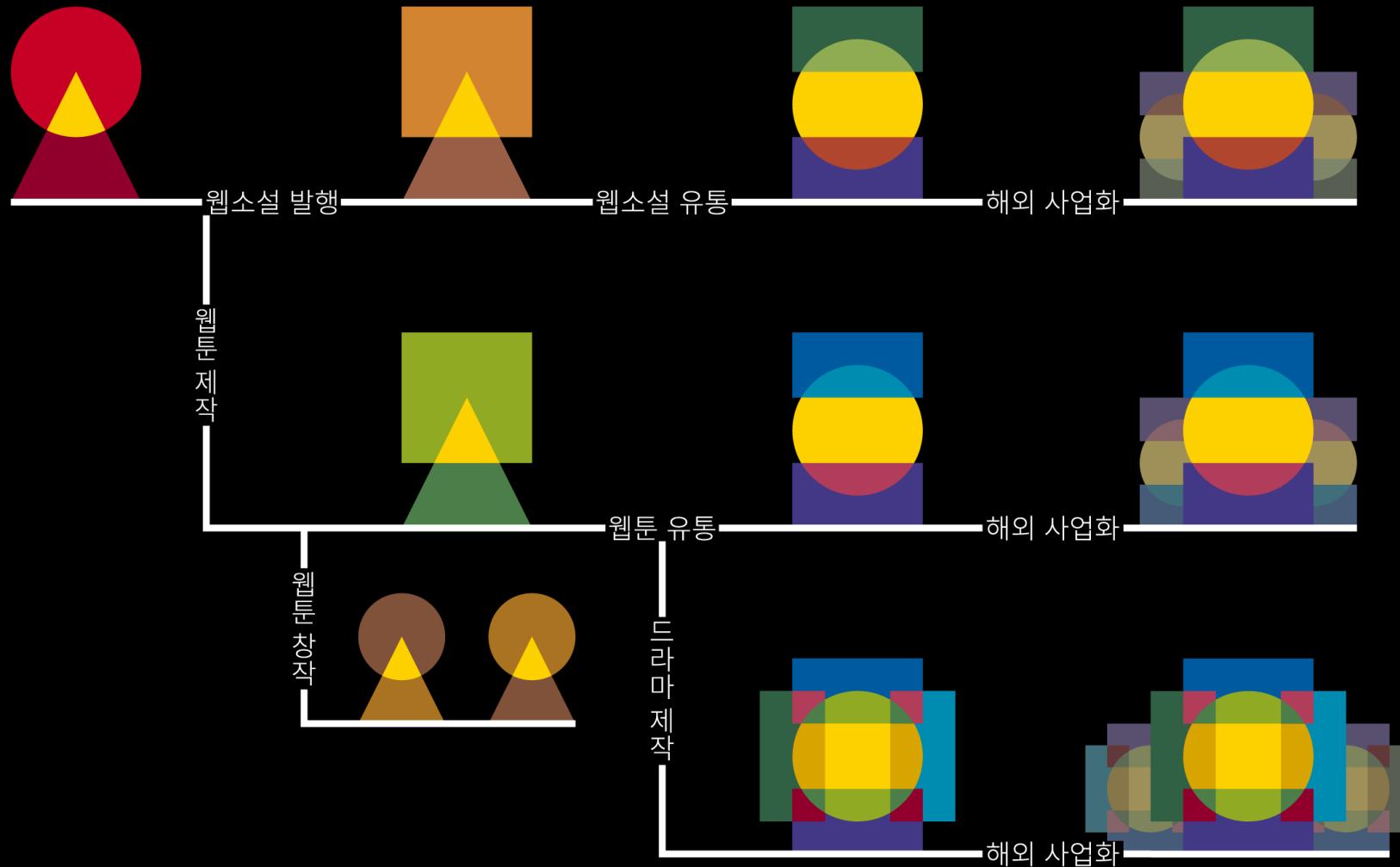
계약의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한 전체적 파악

02

비합리적인 비밀유지조항에 대한 비판적 접근

03

투명한 수익분배와 정산에 대한 신뢰도 확보



공개 가능한 정보의 표시와 계약의 각 단계마다 권리의무 상호작용의 도식화

# Q&A

서유경 변호사 (법률사무소 아티스)

[ykseo@artislaw.pro](mailto:ykseo@artislaw.pro)

Legal Design @ Thinking

## Strategic Communication Planning & Legal Design:

### K-Contents 계약분쟁 예방 사례를 중심으로

Yukyung Seo (Law Office ARTIS) | E-mail: [ykseo@artislaw.pro](mailto:ykseo@artislaw.pro)